

## 지침·편람 분야 인권영향평가 방법 및 결과

- 자치법규 개정 권고에 이어 이를 시정에 구체화한 지침·편람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공무원의 인권 감수성을 제고시키고자 함
-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자문단의 검토·협의를 통하여 결과 도출
  - 서울시 인권위원회 분과위원, 외부 전문가, 인권 취약계층 평가단 등 참여
- 3개 영역 12개 분야를 평가
  -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지침·편람(33개) 및 우수사례 발굴
- 인권영향평가 평가기준 및 내용

		인권영향평가 영역·분야	건수	주요 개정 사유
<b>총 계</b>			<b>42</b>	
1	인권침해	계	27	
		① 지침·편람의 법적 근거 제시	-	
		② 자유권	3	- 모든 시·도에 대해 자원봉사자 및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표현 - 시민행동에 관하여도 재난 취약계층의 대피요령 및 주변인의 대처요령 등의 내용이 포함 - 특히 장애인, 노인, 입원 환자, 외국인 등 초미세먼지 상황에 취약하면서도 정보 전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고루 정보가 전달되는 것이 중요
		③ 사회권	2	- 학력과 연령 외에 다른 차별 금지 요소들을 구체화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음
		④ 평등권 / 차별	16	- 차별적 또는 한글 순화 필요 언어 : 미혼 → 비혼, 유모차 → 유아차, 부모 → 보호자, 언니·오빠 → 선배 등
		⑤ 사생활보호권	5	- 정보주체로부터의 개인정보 제공·수집·이용 등의 형식과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는 바를 준수하고 있지 못하고, 그 처리·폐기·관리 등에 관한 내부 지침이 언급되어 있지 않음
		⑥ 기타 문제점 (정확한 통계 근거 제시 없이 차별적 표현)	1	- 노동자 중 외국인 및 고령자의 비율 증가 자체만으로 건설업 생산기반이 약화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, 차별적 표현에 해당함.
2	침해구제	계	12	
		① 제재적 처분 등의 제시	3	- 처분의 기준이 재량으로 되어 있음. 제재적 처분 등을 적시할 경우 포괄적인 재량규정보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
		② 구제절차 마련	5	- 행정절차법의 내용 반영한 개선 필요
		③ 구제절차의 접근가능성과 실효성	4	- 행정절차법상 이의신청 절차에 따른 내용을 일부 준용하여 내용을 구체화한 개선
3	참여권	계	3	
		① 이해관계자의 의견진술권	2	-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 필요
		② 정보접근성과 투명성	-	
		③ 공직활동 참여권 (시민참여기구 구성 시 소수자 참여 고려 등)	1	- 예산에 대한 시민의 공적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에서는 성별, 지역, 연령 뿐 만 아니라 직업, 장애 여부, 소득 등 관련된 소수자 집단을 폭넓게 고려하여 고루 참여하도록 노력할 필요